

서울고등법원 2016. 9. 30 선고 2015나2059274(본소), 2015나2059281(반소) 판결
[근저당권말소 · 계약금반환 및 약정이자지급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6. 9. 30 선고 2015나2059274(본소), 2015나2059281(반소) 판결
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9. 10 선고 2015가합102614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A

원고, 항소인B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C

변론 종결 2016. 9. 7.

판결 선고 2016. 9. 30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가합102614(본소),
2015가합105606(반소) 판결

주 문

1.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(반소피고) A과 원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 A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(반소피고) A과 원고 B이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청구취지

본 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) A(이하 '원고 A'이라고 한다)로부터 500,000,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4. 2. 접수 제160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, 당심에 이르러 원고 A이 피고에게 500,000,000원의 변제를 선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]

반 소

주위적 및 예비적으로, 원고 A은 피고에게 950,000,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1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고의영

판사양환승

판사최영은

별지